

I 분쟁조정센터 (증권사와의 분쟁 발생시)

□ **(분쟁조정이란?)** 분쟁사건에서 분쟁 당사자가 무료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, 조정기관이 중립적인 3자 입장에서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

○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 『화해계약』 성립하여 소송 없이 분쟁해결이 가능

*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만족을 줄 수 있어 효율적 분쟁 해결이 가능

□ **(KRX 조정대상)** 한국거래소의 증권·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소 회원사-위탁자(고객) 간 또는 회원사 간 분쟁을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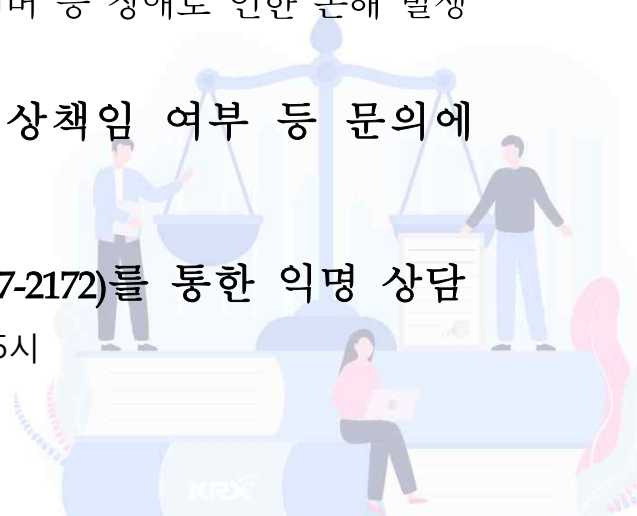
○ **(주요유형)** 분쟁조정 대상 주요유형

- ① 일입매매 : 과당매매 등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
- ② 임의매매 :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 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
- ③ 부당권유 : 거짓내용 제공,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
- ④ 주문집행 : 고객 매매주문 처리 오류, 반대매매 통지 미비 등
- ⑤ 전산장애 : HTS, MTS 사용 시 증권사 서버 등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

□ **(분쟁상담)** 분쟁조정신청 전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 문의에 대한 상담 진행

○ 분쟁조정센터 내방 또는 전화(☎1577-2172)를 통한 익명 상담

*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10시~12시, 오후 1시~5시



□ (분쟁조정 신청방법)

- (온라인)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(<http://sims.krx.co.kr>)
- (FAX) 02-786-0263
- (우편 또는 방문) 073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별관2층 분쟁조정센터

[KRX 분쟁조정 절차]



□ (분쟁조정 후 소송지원)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회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을 거부하거나 피신청인(회원)이 조정 결정전 소를 제기한 경우* 소송을 무료로 지원**

- * 조정선례·판례로 보아 신청인 청구 인용으로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한함
- ** 소송지원 수임변호사 임명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심급별 1천만원 이내

[참고] 법원연계 조기조정

- **(조기조정)** 이미 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본안재판부 변론 기일 지정 전 재판부 관여 없이 조정위원 주도로 진행하는 민사조정법상의 제도
 - 거래소는 법원연계형(외부 분쟁조정기관) 조기조정을 수행하며, 장기간 쌓아온 증권관련 분쟁조정 노하우 및 증권시장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
- **(조정절차)** 본안재판부가 사건을 조기조정에 회부하면 조정 담당판사가 거래소 등 외부기관에 조정사건을 배당
 - 합의 성립 시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(강제조정)을 내리고, 합의 불성립 시 소송으로 복귀

[분쟁조정센터]

- ▷ 홈페이지 : <http://sims.krx.co.kr> (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)
- ▷ 전화상담 : 1577-2172
- ▷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2층
분쟁조정센터 ·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



II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[불공정거래 사실 인지시]

- **(불공정거래란?)**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가격 형성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됨
- **(신고사항)**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시세 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
 - 위반행위자, 일시, 방법 등 구체적 위반사실과 입증자료 첨부
- **(신고방법)**
 - (온라인) 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stockwatch.krx.co.kr>)
 - (FAX) 02-3774-4369, (유선) 1577-0088
 - (우편) 073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투자자보호부
- **(신고자 포상제도)** 한국거래소가 신고내용의 중요도, 조사 및 적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 지급
 - (소액포상)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(일반포상) 신고내용이 감독기관 통보, 검찰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진 경우
 - (특별포상) 거래소의 제보 공고에 따라 신고내용이 시장감시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[불공정거래 신고센터]

▷ 홈페이지 : <http://stockwatch.krx.co.kr>

▷ 전화 : 1577-0088

▷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신관 투자자보호부

Ⅲ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[불공정거래 피해시]

가.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

- **(정의)**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 인지 및 구제방법 모색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
 - **(제공정보)** 불공정거래 유형, 불공정거래 조사·제재 절차, 불공정거래 관련 법원의 판결정보 및 뉴스정보
- **(조회방법)** 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help.krx.co.kr>) 조회

나. 법률상담

- **(정의)** 법률전문가의 조언 등 조력을 통해 일반인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
 - **(상담내용)** 증권·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가능 여부, 소송 절차, 집단소송 관련 문의 등
- **(신청방법)**
 - **(온라인)** 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 『법률상담실』에서 신청
 - **(전화)** 1577-0088
 - **(방문상담)** 방문전 전화·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예약 후 진행
 - *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10시~12시, 오후 1시~4시



다. 소송기초자료 제공

- **(정의)** 손해배상소송을 제기·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정보를 법원 및 소송당사자인 투자자에게 무료 제공
 - **(제공정보)**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개별종목 호가 및 매매 정보 등
 - **(제공요건)**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신청건에 한하여 제공(관련성 입증 자료* 첨부 필요)
 - * 제소前 : 종목보유내용 및 법무법인 명의의 자료요청공문 등
 - 제소後 : 소장사본 등
- **(신청방법)** 소송지원센터 홈페이지 『소송기초자료 신청』에서 신청
 - 자료를 검토하여 법원 및 소송당사자에 제공

[참고] 불공정거래 소송 손해액 감정

-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및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, 법원재판부의 감정요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요건인 손해액 등을 계산하여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로 제공하는 업무 수행

[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]

- ▷ 홈페이지 : <http://help.krx.co.kr>
- ▷ 전화 : 1577-0088
- ▷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2층
분쟁조정센터·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